

한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그룹회의 의장국으로 선출

“지식재산분야에서 아시아 지역 개도국 선도역할 수행”

특 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 12. 24(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한국이 차기 의장국(Coordinator)에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WIPO에는 현재 선진국그룹(B그룹), 아시아그룹, 아프리카그룹, 중남미그룹, 중앙유럽그룹, 동유럽그룹 및 중국의 7개 지역그룹이 있으며, 이들 지역그룹을 중심으로 각종 회의에서 각국 입장이 사전 조율된다.

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그룹회의의 의장국이 됨에 따라 향후 WIPO의 각종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논의의 주도국으로 부상함은 물론, 지식재산분야에 있어 아시아 지역내 29개 개도국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그룹회의의 의장역할은 주제네바대표부

특허관인 박주익(朴周翼) 서기관이 2004년도 상반기 동안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WIPO 아시아그룹회의 의장국 선출은, WIPO 사업예산위원회 의장국, APEC 지식재산권전문가 그룹(IPEG) 의장국 선출과 더불어, 그동안 특허청이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온 지재권 분야에서의 국제무대진출 강화와 특허행정의 세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WIPO는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 각종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슈를 총괄하고 있는 UN 산하 전문 국제기구로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등 23개 국제조약을 관掌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아시아 지역내 29개
개도국들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

발명으로 얻은 보람 특허로 보호하자

산업스파이 방지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 통과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

영업비밀 유출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타인의 유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사용하는 행위인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2월 2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하여

최근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관련기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 경쟁국인 중국·대만 등에 유출되고 있음에도 처벌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98년이후 '03년 상반기까지 총 22조원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종전 법률에 의하면, 수조원대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더라도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 밖에 부과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률은 부당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기업내부문제’ 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수, 예비·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은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이

버스쿼팅(cyber-squatting), 즉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1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루어지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개정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상표권자등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고 온라인 상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특허청

**개정법률, 부당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부과, 경제적 유인 제거**